통합체육회 규정 (신규) ● 2016. 2. 26 제정

● 2017. 8. 25 개정

● 2018. 2. 27 개정

● 2019. 2. 27 개정

과천시체육회 규약 전부개정 ● 2019. 8. 29 개정

● 2019. 11. 8 개정

● 2020. 5. 22 개정

과천시체육회 규약

| 총 | | | | 칙 |
|---|--------------------------|-------------------|------------------------------------|---|
| 조 | | | | 직 |
| 총 | | | | 회 |
| 이 | | 사 | | 회 |
| 임 | | | | 원 |
| 종 | 목 | 단 | 체 | 및 |
| 동 | 치 |] . | 육 | 회 |
| 각 | 종 | 위 | 원 | 회 |
| 재 | 산 | 및 | 회 | 계 |
| 사 | | 무 | | 국 |
| 보 | | | | 칙 |
| | 丕 총 이 임 종 동 각 재 사 | 不 총 이 임 종 동 각 재 사 | 조 총 이 사 임 목 체 각 종 단 대 산 및 | 조 총 이 가 자 차 차 가 다 가 하 하 다 가 가 다 가 다 하 다 가 다 다 다 다 다 다 |

과천시체육회 규약

제1장 총 칙

-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은 경기도체육회 규약 제5조 제3항 및 제 35조에 따라 경기도체육회의 지회인 과천시체육회《(구)경기도체육회의 과천시지부와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회원인 과천시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② 명칭은 과천시체육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로 하며, 영문으로는 "Gwa cheon Sports Council"로 칭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시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과천시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 1.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과천시종목단체(이하 "종목단체"라 한다) 및 동체육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2. 관내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내외 교류
- 3. 경기도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참가 및 경기도체육회가 승인 한 사업의 주최·주관
- 4. 전문체육 육성 사업 (학교운동부 선수, 전문 지도자 지원, 경기기술의 연구향상, 직장운동경기부 및 지역 선수·지도자 육성, 지역체육인의 권 익증진과 복지 및 교육관련 사업 등)
- 5. 범시민 생활체육 운동과 제반 사업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 6.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 7.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를 위한 사업

- 8. 지역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 9. 체육공로 유공자 표창 등 포상
- 10. 체육운동 및 활동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통계, 선전계몽, 간행물 발간
- 11.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 12. 과천시로부터 목적에 맞게 수탁 받은 업무와 이와 관련된 제반사업
- 13.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 및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 제5조(조직) ① 종목단체는 본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 2. "준회원단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 준회원단체로서 가입을 승인 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 3. "인정단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 ③ 본회 산하에 동체육회를 둘 수 있으며, 동체육회는 본회의 지회로 하되,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제6조(권리와 의무) 본회는 경기도체육회 규약 제7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7조(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의 권리와 의무) 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의 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경기도체육회 규약 제7조를 준용한다.

제8조 삭제, 조이동<2019. 11. 8.>

-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1. 본회의 규약(또는 기본규정)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 2. 본회의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 3. 60일 이상 종목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 4. 국제 및 국내 체육기구와의 분쟁
- 5. 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 6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해당 단체 임원은 관리단체 지정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 ③ 관리단체 중 본회의 정회원단체는 본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회가 경기도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 ⑤ 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종목단체규정」제36조에 따라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 본회는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경기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5조에 따라 본회의 회원이 되려는 종목 단체는 경기도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본회에 회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의 탈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본회에서 탈퇴 할 수 있다.
- ③ 본회는 경기도체육회 「입회 및 탈퇴 규정」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하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 ④ 종목단체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본회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의 결로써 제명하거나 정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로, 준회원단체는 인정단체로 강등할 수 있다.
- ⑤ 경기도 종목단체가 결성되지 않은 종목이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1조(대의원)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1.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
- 2. 제5조 제3항에 따른 동체육회의 장
- ② 정회원의 장 또는 동체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회의 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대의원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제1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본회의 해산 및 규약(또는 기본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정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 3. 준회원단체의 강등 및 제명
-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 제13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야 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4.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

- 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 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4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장이 된다.

-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6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 제17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사무국장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 ③ 해임안은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이사회

-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3.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 8.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가입승인 및 인정단체의 제명
- 9. 기타 중요사항
-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 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이사중에서의장을 선출 한다.
 -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

- 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21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 제22조(서면결의)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 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 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원

- 제2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회장 9인 이내
 - 3. 이 사 26인 이상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
 - 4. 감 사 2인
 - ② 본 회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본회의 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
 - ② <삭제>
 - ③ 대의원확대기구는 다음 각 호의 선거인으로 구성한다.
 - 1.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 2. 종목단체(정회원)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 3. 동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 ④ 제3항 제2호와 제3호의 선거인은 회장 선거일 전 60일까지 구성된 대

의원으로 한다.

- ⑤ 본회는 선거일 결정과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⑦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 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⑧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2. 다수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3.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⑨ 회장 당선인이 본회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①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기탁금의 반환조건, 대의원확대기구의 규모와 구성, 등록 및 선거 절차, 선거관리위 원회의 설치, 부당한 선거개입 및 그에 따른 징계 등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경기도체육회 규약'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하고,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제25조(선거의 중립성) ① 본회는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

- 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2. 본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3. 위원장은 호선하며, 본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 ③ 본회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 시·군·구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 시·군·구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본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 ⑤ 경기도체육회는 본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회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는 이에 따라야한다.
- 제26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 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경기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제27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며, 부회장중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경기도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③ 학교체육 전문가 1인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④ 부회장 중 1인은 부시장으로 하며, 과천시 문화체육과장과 본회 사무 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⑤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2. 전문체육 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3. 생활체육 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4. 교육계 인사와 동체육회 임원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한다.
- 5.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6.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정회원단체 중 회원종목단체 대표인 대의 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한다.

- ⑧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⑨ 본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경기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기도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회의 임원이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 ① 경기도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시청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⑤ 임원이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 ⑥ 임원이 본회(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구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를 포함한다.)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경기도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직무가 정지된다.

- ① 본회 임원이 본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 가 정지된다.
- ⑧ 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본회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 국장을 포함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 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⑥ 삭제
 - ⑦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직근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 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 ⑧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로부 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가 이 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

가 시작되다

- ⑨ 감사의 임기는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이후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종목단체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 에 가담하여「형법」제314조 및「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5. 국민체육진홍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 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 제3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 1. 본회 규약 제27조 제9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2.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 3. 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 ③ 종목단체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경기도체육회가 요구한 경우 관리단체 지정요구서가 접수된 30일 전부터 또는 본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할경우 이사회 안건을 회장, 부회장, 이사에게 통지한 시점 30일 전부터관리단체 지정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는 임원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않는다.
- 제32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종목단체 및 동체육회

- 제33조(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본회의 회원인 종목단체는 스포츠 클럽 및 등록팀(학생부·일반부)으로 조직한다.
 - ② 종목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해서는 경기도체육회「경기도종목단체규정」에 따라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 제34조(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본회 종목단체의 임원은 경기도종 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② 본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

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③ 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횟수 산정 시 종목단체 및 다른 시·군종 목단체 및 경기도규모 연맹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 제35조(동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 ① 본회는 지회인 동체육회를 둘 수 있다.
 - ② 동체육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동체육회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이 규약을 준용한다.
- ④ 동체육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규약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 제36조(동체육회의 임원의 인준 및 취소) ① 동체육회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예외로 한다)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② 동체육회는 학교체육 전문가 1인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본회는 동체육회의 임원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장 각종 위원회

-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회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다.

- 1. 본회, 종목단체, 동체육회의 규정관리
- 2. 본회, 종목단체, 동체육회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
- 3. 종목단체, 동체육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 심의
-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 2. 스포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 워이 될 수 없다.
-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2.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임·직원인 사람
- 육회 규약 및「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제39조(위원회의 유영 등) ①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는 사람은 본회가 설치하는 제37조부터 제38조까지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19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 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부동산

- 3 기금
-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 제41조(재워)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 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종목단체 및 동체육회, 임원 등 회비
-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3 기부금 및 차조금
- 4. 사업수익금
-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 7. 기타수입금
- ④ 이 밖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체 제42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 1. 이월결손금의 보전
 -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약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회의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 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 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본회 및 종목단체, 동체육회의 임직원
- 2. 본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 3. 기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본회 및 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제4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시장과 긴 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
 - ② 본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 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 ② 본회는 종목단체 및 동체육회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함 수 있다.
- 제48조(경기도체육회의 감사·정계 등) ①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본회 및 본회의 회원 또는 지회는 그 지원금을 관련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경기도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 및 본회의 회원 또는 지회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 감사할수 있다.
 - ③ 본회 및 본회의 회원 또는 지회가 경기도체육회의 규약,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경기도체육회는 해당단체에 대하여 규약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본회는 과천시장(주무부서장)이 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본회에 조사, 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본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천시장(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본회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 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본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 ⑦ 본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과천시장(주무부서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본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경기도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감사규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48조의 2 삭제<2020. 5. 22.>

제9장 사무국

- 제49조(사무국) ① 본회에 사무국를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 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 ⑤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⑥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50조(사무국 직제 등)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 **제51조(해산)** ① 본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3 이상의 해산 결의 또는 시 장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정한다)로 해산한다.
 - ② 본회가 해산 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과천시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얻어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 제52조(규약의 변경) ① 본회의 규약(또는 기본규정)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본회의 규약(또는 기본규정)은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 제53조(규약 제·개정) ① 본회는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규정」에 따라 본회의 규약(또는 기본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본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의 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 ③ 본회는 규약(또는 기본규정), 직제규정의 제·개정을 할 경우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를 통해 경기도체육회에 알려야 한다.
 - ④ 본회의 규약(또는 기본규정) 및 제 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규약(또는 기본규정) 제·개정시 시비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경 우에는 반드시 시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54조(규약의 해석 등) ① 경기도체육회「시·군체육회 규정」은 본회의

- 규약(또는 기본규정)에 우선하며, 본회의 규약(또는 기본규정)을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회의 규약(또는 기본규정)과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과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
- ② 본회가 경기도체육회 규약, 경기도체육회「시·군체육회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5조(제한사항) 본회가 경기도체육회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회는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경기도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6조(경영공시) ①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16. 2. 26>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체 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본회의 (구)경기도체육회의 시·군지부인 (구)과 천시체육회,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구)과천시생활체육회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과천시체육회 및 (구)과천시생활체 육회가 통합하여 본회가 출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약 시행 당시 (구)과천시체육회 및 (구)과천시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본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 ③ 이 규약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본회의 회장은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 된다.

- ④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본회가 출범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첫 번째 임 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 총회일까지로 하다.
- ⑤ 본회 임원(시장이 회장인 경우와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및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의 중임횟수에는 (구)과천시체육회 및 (구)과천시생활체육회의 임원의 중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 ⑥ 종목단체 임원의 중임횟수에는 (구)과천시경기단체와 (구)과천시종목 별연합회. (구)동체육회의 임원의 중임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 ① 이 규약 시행 당시 (구)과천시경기단체(비통합 대상 종목으로 한정한다) 및 (구)과천시종목별연합회(비통합 대상 종목으로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해 (구)과천시체육회 또는 (구)과천시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원회에서 중임횟수 제한 허용을 결정한 경우 본회의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구)과천시경기단체와 (구)과천시종목별연합회가 통합대상 종목인 경우, 해당 단체의 임원은 (구)과천시체육회 및 (구)과천시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한다.
- 제4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구)과천시체육회와 (구) 과천시생활체육회의 직원은 과천시체육회의 직원이 된다.

부 칙 <개정 2019. 8. 29>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체 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본회의 (구)경기도체육회의 시·군지부인 (구)과 천시체육회,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구)과천시생활체육회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과천시체육회 및 (구)과천시생활체 육회가 통합하여 본회가 출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약 시행 당시 (구)과천시체육회 및 (구)과천시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본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 ③ 이 규약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본회의 회장은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 된다.

- ④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본회가 출범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첫 번째 임 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 ⑤ 본회 임원(시장이 회장인 경우와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및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의 중임횟수에는 (구)과천시체육회 및 (구)과천시생활체육회의 임원의 중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 ⑥ 종목단체 임원의 중임횟수에는 (구)과천시경기단체와 (구)과천시종목 별연합회, (구)동체육회의 임원의 중임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 ⑦ 이 규약 시행 당시 (구)과천시경기단체(비통합 대상 종목으로 한정한다) 및 (구)과천시종목별연합회(비통합 대상 종목으로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해 (구)과천시체육회 또는 (구)과천시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원회에서 중임횟수 제한 허용을 결정한 경우 본회의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구)과천시경기단체와 (구)과천시종목별연합회가 통합대상 종목인 경우, 해당 단체의 임원은 (구)과천시체육회 및 (구)과천시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한다.
- 제4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구)과천시체육회와 (구) 과천시생활체육회의 직원은 과천시체육회의 직원이 된다.
- 제5조(다른 제규정의 개정) ① 사무국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과천시체육회 규약 (과천시 체육에 관한 규약) 제48조"를 "과천시체육회 규약 제50조"로 한다.
 - ② 사무국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한다.

- ③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본문 및 제7조 제1항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9조 중 "제10조 제2항"을 "제9조 제2항"으로 한다.
- ④ 과천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2조의 본문 중 "제38조"를 "제37조"로, 제3조의 본문 중 "제38조 제1항"을 "제37조 1항"으로, 제4조 제4항중 "제38조 3항"을 "제37조 3항"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19.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체 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개정) 본회 규약 부칙(2016.02.26.) 제3조제4항 중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총회일까지"를 "첫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 다만 감사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약 시행 당시 회장의 임기는 제29조제1항 및 부칙 제2조(부칙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따라 2020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

② 시군체육회는 이 규약 제29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5일까지 회장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약 제 2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은 이 규약 제29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6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회장과 회장 취임 이후 선임되는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이 규약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 다만 감사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제규정의 개정)

① 과천시 종목단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의 본문 중 "제32조"를"제33조"로, 제23조 제1항의 본문 중"제26조"를"제27 조"로, 제23조 제4항의 본문 중 제10조 제4항을 제11조 제4항으로, 제25 조 제2항의 본문 중"제37조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를"제38조에 따른 스 포츠공정위원회"로 한다.

②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및 제7조 제1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 9조 중 "제9조 제2항"을 "제10조 제2항"으로 한다.

③ 과천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2조의 본문 중 "제37조"를 "제38조"로, 제3조의 본문 중 "제37조 제1 항"을 "제38조 제1항"으로, 제4조 제4항중 "제29조, 제37조 3항"을 "제30조, 제38조 3항"으로, 제12조 2항 "제17조 제2항"을 "제18조 제2항"으로 한다. ④ 과천시체육회 이사회 및 임원 운영규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중 "제26조"를 "제27조"로, 제3조의 본문 중 "제29조, 제30조"를 "제30조, 제31조"로 한다.

부 칙<개정 2020.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체육회장 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